《증보문헌비고》〈직관고〉에 반영된 시호에 대한 자료적분석

리 명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학분야에서도 아직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김일성전집》제32권 332 폐지)

《증보문헌비고》〈직관고〉26, 27, 28에는 시호 1, 시호 2, 시호 3으로 나뉘여 시호에 대한 자료들이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증보문헌비고》 239권, 240권, 241권에 해당된다.

시호란 임금이나 2품이상의 관리, 공신, 이름난 유학자가 죽은 후에 그의 공적과 덕행을 칭송하여 붙여주는 이름을 말한다.

시호 1에서는 시호의 일반적리해에 대하여 서술하고 동국견행시법(東國見行謚法; 우리 나라에서 시행된 시호법), 력대 시호(歷代謚號; 력대 왕들의 시호), 신시(臣謚; 신하들의 시호) 등을 서술하고있다. 시호 2, 3에는 시호의 류형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다.

《증보문헌비고》(직관고)에 반영된 시호에 대한 자료에는 무엇보다먼저 시호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기록되여있다.

저자는 《시호라는것은 지나온 사적이다.》, 《그 시호를 듣고 그 정사를 알수 있다.》라고 한 옛 기록을 들면서 《상을 주는것은 비록 중요하더라도 후세에 미치지 못하며 형벌은 비록 엄하더라도 한 시대에 경계하는것으로 될뿐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시호의 중요성을 강조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저자는 《좋고나쁜 시호는 〈영광〉과 〈치욕〉의 이름으로서 그 사람과 더불어 썩지 않는다.》고 하면서 《옛날 성스럽고 현명한 임금은 시호제정을 선과 악을 드리내여 찬양하고 징계하는 수단으로 여기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시호를 리용하여 세상사람들로하여금 선한 행위를 하게 하였고 악한 행위를 두려워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큰 행적을 남긴 사람에게는 큰 이름을, 작은 행적을 남긴 사람에게는 작은 이름을 받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저자의 이 견해를 놓고 보면 시호란 사람이 죽은 후 그 사람의 생애를 따져보고 그가 쌓은 공적과 덕행에 따라 붙여주는 명예칭호라고 볼수 있다. 다시말하여 공덕을 쌓은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을, 못된짓을 한 사람에게는 불미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 두 부류의 이름을 통털어 시호라고 하였던것이다. 즉 시호는 이른바 영광스러운 이름과 치욕스러운 이름을 다 포괄하고있다. 결국 시호제정의 목적은 후세사람들로 하여금 옳은것은 장려하고 그른것은 경계하게 하자는데 있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봉건충군사상,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한 《선》이였으며 《악》은 군주제도의 유지확립에 저촉되는《악》이였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시호를 제정할 때 공덕만을 찬양하여 시호를 정하군 하였다. 이로부터 시호라고 하면 생전의 《공덕》만을 찬양하여 붙여주는 명예칭호로 간주되였다.

《증보문헌비고》(직관고)에 반영된 시호에 대한 자료에는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적용된 시호법에 대하여 기록하고있다. 여기에는 시호에 적용된 시호글자와 매 시호글자가 담고있는 의미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여기에 수록된 시호글자를 보면 문(文), 충(忠), 정(貞), 공(恭), 양(襄), 정(靖), 량(良), 효(孝), 장(莊), 안(安), 경(景), 장(章), 익(翼), 소(昭), 평(平), 희(僖), 무(武), 강

(康), 정(正), 숙(肅), 인(仁), 경(敬), 정(定), 혜(惠), 의(懿), 헌(憲), 렬(烈), 헌(獻), 간(簡), 원(元), 성(成), 순(純), 목(穆), 민(敏), 의(毅), 절(節), 청(淸), 선(宣), 현(顯), 순(順), 단(端), 장(剛), 영(榮), 장(壯), 제(齊), 대(戴), 의(義), 온(溫), 도(度), 장(長), 명(明), 광(臣), 각(恪), 결(潔), 달(達), 유(裕), 무(懋), 환(桓), 호(胡), 신(信), 질(質), 이(夷), 민(愍), 도(悼), 경(頃), 개(介), 백(白), 은(隱), 수(修), 정(丁), 정(玎), 회(懷), 과(果), 성(聖), 신(神), 지(智), 홍(弘), 엄(嚴), 화(和), 광(光), 희(熙), 창(昌), 종(宗), 신(愼), 량(諒), 겸(謙), 총(聰), 선(善), 덕(德), 의(儀), 영(英), 극(克), 예(譽), 은(殷), 관(寬), 밀(密), 정(靜), 연(淵), 진(眞), 통(通), 탄(坦), 견(堅), 위(魏), 가(嘉), 빈(彬), 용(容), 익(益), 위(衛), 직(直), 개(愷), 휴(休), 령(靈), 사(思), 무(繆), 려(厲), 묵(墨), 황(荒), 민(閔), 애(哀), 상(殤), 맥(麥) 등 121자이다.

물론 시호로 쓰인 글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실제로 력대 명신시호와 조선봉건왕 조실록 및 《증보문헌비고》의 〈제계고〉를 통하여 보면 녕(寧), 당(當), 도(途), 숙(淑), 증 (證), 철(哲), 후(厚), 흠(欽), 흥(興) 등과 같은 시호글자들도 있었다.

이와 함께 매 시호글자가 담고있는 의미가 한자 4자구를 리용하여 여러 측면에서 규제되고있다. 실례로 문(文)에는 도덕이 있고 견문이 넓은것, 도덕이 있고 학문이 넓은것, 학식이 넓고 글을 좋아하는것, 학식이 넓고 견문이 넓은것, 학문에 성실하며 묻기를 좋아하는것, 학문에 성실하며 글을 좋아하는것, 학식이 넓고 아는것이 많은것, 보고 들은것이 많은것, 영민하면서 학문을 좋아하는것, 대바른것을 따르며 인자하고 은혜로운것, 인자하고 은혜로우면서 백성을 사랑하는것, 믿음에 충실하고 사람을 사랑하는것, 강직하고 남을 도와주는것 등의 의미가 규제되여있다. 그리고 충(忠)에는 자신이 위태로운 처지에 빠져도 임금을 받드는것, 임금을 섬기는데서 절개를 지키는것, 성쇠에 관계없이 순결하고 확고한것, 나라를 걱정하면서 가정을 잊는것, 현명한 사람을 떠받들어 모든것을 다하는것, 능력있는 사람을 떠받들어 모든것을 다하는것, 청렴하고 정직하며 공정한것, 변란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잊지 않는것, 갖은 재난과 시련속에서도 나라를 잊지 않는것 등의 의미가 규제되여있다. 이렇게 매 시호글자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시호에 쓰이였던것이다.

《증보문헌비고》(직관고)에 반영된 시호에 대한 자료에는 다음으로 력대 시호 즉 력대 왕들과 관련한 시호에 대한 자료가 기록되여있다.

력대 시호에는 우선 삼국시기 왕들과 관련한 시호에 대한 자료가 있다.

고구려시기 왕들과 관련한 시호를 보면 이 시기 원릉(임금의 무덤)에 호를 올리였으며 광개토왕때부터 왕이 죽은 후 의례히 존호(봉건사회에서 왕의 《덕》을 칭송한다고 하여부르는 칭호)를 제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장수왕 79년에 왕이 죽자 《강》(康)이라는 시호를 올리였다는 기록이 있다.

* 존호와 시호는 다른 개념이지만 이 글에서는 공통성을 참고로 하여 함께 취급하였다.

동명성왕의 《성》(聖)자, 류리명왕의 《명》(明)자, 대무신왕의 《신》(神)자도 역시 시호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성, 명, 신자는 모두 시호글자에 해당되며 옛날에도 비록 시호법이 있었으나 문무의 큰 공을 이룩하여 나라를 편안히 한것으로서 다만 한개 글자로 정하였을뿐이였다.

여기에서는 이와 함께 고구려의 존호(시호)법을 모방하여 백제, 신라에서도 시호를 적용하였는데 신라의 지증왕이 죽자 여러 대신들이 모여 지증이라는 시호를 주었고(《삼국사기》에서는 이때부터 신라에서 시호가 시작되였다고 기록하고있음.) 백제에서 무녕왕이

죽자 무녕이라는 시호를 주었다고 기록하고있다. 여기에 쓰인 증(證)자와 녕(寧)자가 앞에서 서술한 시호글자에 없는것은 왕을 절대시하고 신성시하던 당시 력사가들의 립장으로부터 왕에게 쓰인 시호글자는 쓰지 않고 신하들의 시호를 기본으로 시호글자를 수집한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력대 시호에는 고려시기의 왕들에 대한 시호제정 및 시호개정에 관한 사실들이 기록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고려 광종 26년(975)에 6대의 시호를 주었고 목종 5년(1002)에 선왕선후의 시호를 제정하였으며 고려 현종 3년(1012)에 전왕의 시호를 고쳤는데 처음 목종이 살해당하였을 때 강조가 《선령》이라고 시호를 올리였던것을 이때에 와서 고쳤다고기록하였다. 그리고 예종 즉위초년(1105)에 현종의 시호인 《회상》을 《공상》으로 개정하였고 고종 2년(1215)에 태조, 헌종, 현종, 선종, 숙종, 예종, 인종, 신종, 강종의 시호를 질리였 하였으며 경효왕 34년(1308)에 왕이 죽자 해당 기관에서 《대행왕》이라는 시호를 올리였지만 선효왕이 마땅치 않게 여기면서 《순성수정상승대왕》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고려시기 왕들에 대한 시호관련기록을 통하여 고려시기 왕들에 시호추증이 이전 시기에 비하여 활발하게 벌어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력대 시호에는 또한 조선봉건왕조시기 왕과 왕후의 시호제정에 대한 사실자료들이 기록되여있다.

력대 시호를 통하여 보면 조선봉건왕조수립후 왕이 죽으면 곧 묘호, 존호와 함께 시호제정사업이 드림없이 진행되였음을 알수 있다.

이 시기 왕의 시호는 8자, 왕후의 시호는 6자로 된것이 특징이였다.

력대 시호에 세조가 죽은 후 예종 무자년(1468) 9월 왕이 명령을 내리여 시호를 올리게 하니 묘호를 세조라 하고 《지덕륭공성신명예흠숙인호》(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라는 시호를 올리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글자가 다 시호는 아니다.

《예종실록》에는 세조가 죽자 1468년 9월 경진일에 임금이 의정부 당상관들과 이전의 정승을 지낸 사람들, 참판이상을 불러다놓고 시호를 정하여 올리라고 지시하여 신하들이 묘호와 함께 《승천체도렬문영무지덕륭공성신명예인효》(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仁孝)라는 18자로 된 존호를 올리였으며 임금이 그것을 보고 흠숙(欽肅)이라는 시호를 인효앞에 더 넣게 하여 결국 20자로 된 존호를 올리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임금의 시호의 끝에는 효(孝)가 붙는것이 일반적인 규례였다.

현종 즉위초년(1659)에 효종대왕의 시호를 제정하였는데 령의정 정태화가 《력대 성현들의 존호끝에 전례로 〈효〉자가 있습니다. 〈효〉를 묘호로 삼은데다가 〈효〉를 거듭 쓰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효종을 나타나는데에 〈효〉자를 쓰면 안됩니다.》라고 제의하여 〈인〉자로 〈효〉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실록에는 효종의 시호가 《선문장무신성현인》(宣文章武神聖顯仁)이라고 씌여 있다. 이것은 시호의 끝에 대체로 《효》를 썼으며 《효》자앞에 있는것이 시호라는것을 보여 준다. 《현종실록》에 반영된 현종의 시호 《순문숙무경인창효》(純文肅武敬仁彰孝)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의 력대 왕들의 시호의 끝에는 거의나 《효》자를 쓰고있다.

력대 시호에 숙종 7년 빈청에서 왕에게 《력대 성인들의 시호는 모두 8자를 썼는데 유독 공정대왕에게만 〈온인순효〉라는 4글자를 올리여 법에 모자라게 하였습니다.》라고 제의하면서 마땅히 시호를 더 올리여 왕실의식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실이 기록되여있는것과 《숙종실록》 14권에 조선봉건왕조시기 세종부터 이후 왕들에 한하여 8

자로 된 시호를 정하였지만 태조, 태종의 시호가 4자로 되여있어 4자를 첨가하여 8자로만들었다(1683년 4월 신묘일 박세채가 경연에서 태조가 상왕으로 있을 때《계운신무》라는 존호를 받았고 죽은 후에 《성문신무》란 시호를 받았지만 명백히 존호는 존호이고 시호는 시호이니만큼 4글자를 추후하여 올리지 않을수 없다고 제의하여 그해 6월 시호 《정의광덕》을 첨부하여 태조의 시호를 《성문신무정의광덕》이라 정하였고 태종도《예철성렬》을 첨부하여 《문무예철성렬광효》로 정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조선봉건왕조의 력대 임금들의 시호는 8자로 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세조의 시호는 《성신명예흠숙인효》뿐이고 그 앞의것은 존호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일반적으로 존호가 놓이고 《효》자가 마지막에 붙은 8자의 시호가 놓이지만 《증보문헌비고》(제계고)에 수록된 효종의 시호 《흠천달도광의홍렬선문장무신성현인명의정덕》처럼 존호의 가운데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후에 존호를 추증하였기때문일 것이다.

력대 시호에는 선조왕을 부묘(附廟; 사당을 합침)할 때 전례에 따라 의인왕후에게 시호를 더 올리려고 하자 부원군 윤근수가 차자를 올려《선대왕후의 시호는 6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인왕후는 보통날에 존호가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존호를 올리면서의인의 시호를 주었으니 이것이 6글자로 되였습니다. 지금 만약 또 몇글자를 더 올리면글자수가 선대왕후를 초월하여 지나치게 됩니다. 또 여러 조정을 살펴보건대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라고 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왕후의 시호가 6글자로 한정되여있었음을 말하여준다.

력대 시호에 의하면 왕이나 왕후의 시호에서 시호자가 겹치거나 다른 왕이나 왕후의 시호를 침범하는것을 철저히 경계하였다.

《증보문헌비고》〈직관고〉에 반영된 시호에 대한 자료에는 다음으로 신시 즉 신하들에게 준 시호에 대한 자료가 기록되여있다.

신시에는 우선 신하들에게 준 시호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

고려 예종 12년(1117)에 첨서추밀원 김황원이 죽자 그의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하며 세력에 아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도라는 시호를 주었고 인종 4년(1126)에 리자겸의 반란에 동지추밀원사 김진이 불을 달아 죽자 그 절의를 귀중히 여기고 특명으로 렬직이라는 시호를 주었다는것을 비롯하여 고려시기 신하들에게 시호를 준 사실을 기록하고있다. 그리고 조선봉건왕조 세종시기 판서 김구, 판서 김말, 대사성 김반이 모두 경서와 력사에 밝고 성리학에 조예가 깊다 하여 동시에 주감으로 선발하였으며 사람을 가르치고 성인들을 키우는데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여 그들을 3김이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문장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그것은 시호법에 보고 들은것이 많은자를 《문》이라 하고 사람을 가르치는데서 성실한자를 《장》이라고 하였기때문이였다. 여기에는 《사륙신, 생륙신》에게 시호를 준사실과 벼슬추증에 따라 시호를 준사실, 이미 준시호를 개정한 사실에 대하여서도 기록되여있다.

신시에는 또한 시호를 내리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서도 기록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봉상시에서 시호를 주관하였는데 본집에서 죽은 사람의 공적과 덕행, 학문 등이 반영된 시호글장을 례조에 바치면 례조에서는 대조확인하고 평가하여 봉상시에 보내였으며 봉상시에서는 홍문관에 알리고 날자를 정하여 모여앉아 시호를 토론하였다. 이때 봉상시의 정이 여러 관료들과 함께 론의한것을 거두어모았다. 홍문관의 응교가 토의

된 시호초고를 돌려가며 보이고 가부를 물어 3가지 초안을 론의결정하였다. 응교를 시호론의에 참가시키는것은 봉상시의 불공정성을 피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봉상시에서 론의결정한 시호초안을 례조에서 량사(사헌부, 사간원)의 비준을 받아 리조에 보내면 리조에서는 임금에게 제의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곧 시호로 되여 의정이하의 관리들에게 보이고 봉상시에 보내였으며 시호를 내릴 때 임금이 음악과 술을 내려보내여 그 집을 위로하게 하였다.

신시에는 또한 시호의 페단에 대한 자료도 기록되여있다.

일반적으로 시호론의는 봉상시에서 주관하였지만 홍문관의 관리들이 동쪽벽에 자주 모여앉아 간섭하였기때문에 서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합의를 볼수 없었다. 그래서 이름난 재상 리준경은 다른 사람에게 비할바없이 나라에 공로를 세웠지만 오래도록 시호 를 얻지 못하였던것이다.

조선봉건왕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종친이나 정2품의 실직을 지낸 문무관리들에게 시호를 내린다.》라는 시호법이 규제되여있다.

이에 따라 시호를 받을 대상이 죽으면 의무적으로 그 집에서 행장을 갖추어 해당 관청에 보내여야 한다. 비록 보통날 공덕과 행적이 영예롭지 못한자라고 하여 제멋대로 시호를 청하지 않을수 없고 혹은 《양》, 혹은 《황》, 혹은 《혹》으로 시호를 주어도 사양할수 없었다.

그러나 시호법이 무디여지거나 폐지되여 나쁜 시호를 얻을가봐 두려워하며 시호를 청하지 않다나니 나중에는 이름난 신하이고 큰 공을 세운자인데도 시호를 청하지 않는 폐단이 생기였다.

시호 2에는 력대 명신시호 1이라고 하고 문정(文貞), 문충(文忠), 문간(文簡) 등 문(文)과 어울리는 시호로부터 시작하여 량혜(良惠), 량양(良襄), 량정(良靖)까지의 시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고려와 본조로 나누어 벼슬이름과 사람이름을 기록하고있다.

시호 3에는 력대 명신시호 2라고 하고 효간(孝簡), 효헌(孝憲), 효정(孝貞)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적덕(積德), 세양(世襄), 편정(編玎)까지 기록되여있으며 사시(私謚; 사적으로준 시호)와 환관증시(환관들에게 준 시호), 유생증시(유생들에게 준 시호), 일가동시(한가족에게 준 같은 시호), 증시후 개시(시호를 후에 개정한 시호) 등이 기록되여있다.

일가동시에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시호가 같은것, 아버지와 아들의 시호가 같은것, 형제의 시호가 같은것들이 기록되여있으며 증시후 개시에는 대체로 왕이나 왕후의 시호와 관련된것들과 사람이 죽은 후 벼슬을 주면서 시호를 준것 혹은 시호를 고친것 등에 대하여 기록되여있다.

이처럼 시호는 지난 시기 우리 나라 봉건국가의 왕과 왕후, 고위관리들에게 주는 이름으로서 시호의 제정실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적극 장려되였으며 중시되였다. 시호는 당시 국왕중심의 봉건통치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반동적인 통치계급의 리해관계의 산물로서 철저히 통치계급을 위한것이였지 인민대중을 위한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직관고〉에 반영된 시호에 대한 자료는 력사자료의 연구와 리해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앞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더 많이 발굴하고 번역, 정리하여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 사를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